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45 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 박정현·김남근·박홍배

문진석 • 이재정 • 김현정

이광희 • 이학영 • 조승래

신정훈 · 김동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 담하고 있으며,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 하고 있음.

반면,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,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, 박근혜 정부에서는 '최순실 등 민간인에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'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,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.

마찬가지로 이번 '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' 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검찰, 경찰 등 사법기 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.

이에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,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며, 대통령경호본부장에 치안정감을 보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5조의2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047호),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049호), 「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04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대통령경호본부장) 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두며, 대통령경호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.
 - ② 대통령경호본부장은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총괄하며 대통령경호본부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③ 대통령경호본부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·대통령 비서실·국가안보실·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 다.

제17조제2항 중 "국가수사본부장"을 "대통령경호본부장·국가수사본부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5조의2(대통령경호본부장) ①
	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두
	며, 대통령경호본부장은 치안정
	<u> 감으로 보한다.</u>
	② 대통령경호본부장은 「대통
	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에
	따른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
	총괄하며 대통령경호본부 소속
	<u>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u>
	③ 대통령경호본부장은 퇴직
	후 2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ㆍ
	대통령비서실・국가안보실・국
	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
	임용될 수 없다.
제17조(하부조직) ① (생 략)	제17조(하부조직) ① (현행과 같
	<u>수</u>)
② 경찰청장·차장· <u>국가수사</u>	② <u>대통령경호</u>
<u>본부장</u> ・국장 또는 부장 밑에	본부장·국가수사본부장
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	
및 연구·조사를 통하여 그를	
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	
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